

2026년 제1차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- 일 시: 2026년 5월 8일 14:00 ~ 15:00
- 장 소: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
- 회의일정

- 참석의원소개 및 인사말, 개회선언
-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·부의장 선출안
-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

(14:00 회의시작)

1. 참석의원 소개

- 최득수 사무관: 회의일정 및 참석의원 소개.

2 총장 인사말씀

○ 총장

- 기존에 평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어 기능상 대학발전계획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활용한 것 같음. 앞으로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람.

(총장은 인사 말씀 후 퇴장함)

3. 개회선언

- 최득수 사무관: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 선포 함
- 의장이 선출되지 않아, 우선 간사인 기획팀장이 개회를 선언함

4.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 평의위원회 의장부·의장 선출안

○ 최득수 사무관(간사):

- 의장 선출 전이므로 간사로서 1안까지 진행 예정임. 첫 번째 안건인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안을 상정. 의장 및 부의장 추천요청함

- 박명수, 김동익 평의원: 의장에 정달상 평의원 추천함

-일부 평의원이 동의함

○ **최득수 사무관(간사):** 다른 이견 없음에 따라 정달상 평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함.
(정달상 의장이 불참하였기에 간사가 계속 진행함) 다음은 부의장 추천을 요청함

○ **박명수 평의원:** 직원 대표이신 신준용 평의원 추천함

-일부 평의원이 동의함

○ **최득수 사무관(간사):** 이견이 없으므로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의원회 의장에는 정달상 평의원, 부의장에는 신준용 평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함

(「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장이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함)

5. 「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」 개정안 심의·의결

○ **부의장:** 다음은 「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」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. 학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요청.

(간사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)

○ **부의장:** 참석의원들에게 이견이 없는지 의향을 물음.

○ **김진호 평의원:** 제57조 제2항 같은 경우, 명확한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
○ **김동익 평의원:** 적절한 사유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이유로 바뀌면 기숙사 입실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질까 우려됨.

○ **최득수 사무관(간사):** 기숙사 생활에 경우 원칙상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총장의 승인 또한 필요. 세부사항은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으로 보완 예정

○ **김성훈 평의원:** (적절한 사유→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관해) 이렇게 변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함. 적절한 사유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바꾸면 요청하는 학생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됨.

(자세한 질의 응답을 위해 운영부서에서 담당자인 김규 주무관 참석함)

○ **김규 주무관:** ‘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’의 의미는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조금 포괄적으로 한 내용임. 우리 대학 같은 경우 영농에 종사하며 학업하는 학생들, 가정이 있는 학생들,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신청해서 교외 거주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.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함.

- 김성훈 평의원: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원하는지 궁금함.
- 김규 주무관: 거의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음. 한 해에 교외 거주하는 학생은 950여명 중 40~50명 수준임.
- 김성훈 평의원: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음. 다만, '필요한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에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.'로 보완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림.
- 최득수 사무관(간사):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음.
- 박명수 평의원: (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) 의도가 희망하는 경우는 흔히 말하는 학생지향적인 의도가 들어가는 거라서 결과물은 비슷할 것 같음 (적절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)
- 부의장: 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? 없으시면 제57조 제1항은 원안대로 하고, 제57조 제2항은 문구를 수정해서 '기숙사 입실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'로 일부 수정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요?
(일부 평의원이 동의함)
- 부의장: 이견 없으므로 제2호 「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안 심의를 일부 수정안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(의사봉 3타)
- 부의장: 오늘 평의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(14:30 회의마침)

회의결과

- ①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: 정달상, 부의장: 신준용
- ② 「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안: 원안가결
 - 제57조 제2항의 경우 문구를 수정해서 '기숙사 입실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'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으나, 기존 규정 제57조 제3항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에 수정하지 않음.